

#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심사 보고서

1993년 4월 14일

총무위원회

##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4월 3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3년 4월 6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4월 13일) 상정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유용현)

### 가. 제안 이유

구민 생활 건강을 위하여 에이즈 및 간염 검사기기 구입과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등 행정 장비 구입과 청소차 대체 취득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 나. 주요 골자

- 구민 생활 건강을 위한 에이즈 및 간염 검사기기 구입
- 행정사무의 신속, 정확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등 행정 장비 구입
- 구민 홍보를 위한 멀티비전 구입
-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장비 대체 취득

###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무상)

신규 취득 승인 신청 내역을 분석해 보면,

-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 취득 승인 신청한 세무1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경우는 다기능 사무기기의 정수는 기 책정된 사항으로 정수 보강을 위한 승인 신청이며, 다기능 사무기기의 필요성은 기 행정관서,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도 공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업무 처리에 있어 과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이므로 구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지며,
- 문화공보실의 멀티비전 신규 취득 승인 신청은 구 흥보 및 대민 흥보와 교육용으로 필수적 장비로 사료됨.
- 지역교통과에서 신규 취득 승인 신청한 정사진 카메라는 주차 위반 차량 단속 및 기록용으로 신규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 보건소에서 신규 취득 승인 신청한 엘리샤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에이즈 검사시에 사용하는 수동식 혈액 검사로는 바이러스 HIV.1의 검사만 가능하고 위 기기의 구입시에는 HIV.2까지의 검사가 가능한 신기기이므로 에이즈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는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됨.

○ 대체 취득 성인 신청 내역을 보면,

청소과에서 승인 신청한 청소차 대형 1대(76,000천원 11톤 압축식) 및 청소차 소형 1대(25,000천원 4.5톤 압착식)는 각각 87년도에 구입된 청소 차량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청소 업무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시장(지시사항 제1호 93.3.12)의 지시로 정수내에서 노후 차량의 교체 구입이므로 청소 수거량의 매년 증가 추세로 볼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 시민과, 지적과, 가정복지과의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과는 호적 사무 민원 처리의 전자복사기로 호적은 국도의 정밀성을 요하고 있음에도 기기의 선명도가 극히 불량하여 민원인에게 지적을 당하는 등 일일 호적 민원 처리가 약480매가 소요되므로 기기의 대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어지며 지적과의 지적 도면 복사기 및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 복사기도 내구연한의 장기간으로 노후되어 신규 취득비가 3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비해 가정복지과의 경우 수리비가 246만원이 소요되는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업무 처리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적으로 오히려 대체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민과의 전자타자기는 대민 봉사용인 점을 감안 내구연한으로 인한 기기의 노후로 시급히 대체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 건설과의 자동 레벨은 고도의 측정기로 정밀성과 기기의 정교함에 따라 오차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업무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위원	답변공무원	질의 요지	답변 요지
임종하 위원	재무과장 유용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년도 예산 편성이 불과 3,4개월전에 편성되어 물품취득예산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5개 품목 14점은 신규 취득하려는 이유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예산심의전 정확한 수량을 판단하여 의회에 취득 동의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4개월여만에 다시 취득 동의를 요구하게 되었음. 차후에는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음.</li> </ul>
이태홍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에 신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는 93년도 예산에 기편성되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득한후 추경에 편성하여 취득코자 함.</li> </ul>
박수용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에서 구입하려는 엘리샤 프로세서는 에이즈 및 간염검사 기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 혈액으로만 검사하는 기기밖에 없었는지?</li> <li>○ 엘리샤 프로세서가 외국제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구는 없었음.</li> <li>○ 외국제임.</li> </ul>
임종하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샤 프로세서와 같은 좋은 의료기구를 구입하여 제대로 판독을 못하여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기를 조작하고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보건소에 국가 시험 자격을 취득한 병리 검사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음.</li> </ul>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